

# 정 관

2004. 1. 6. 제정

2006. 5. 29. 개정

2014. 8. 29. 개정

2020. 9. 15.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에프피에스비”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of Korea” 또는 “FPSB Korea”라 칭한다.

**제2조(목적과 임무)** ① 이 법인은 국제FPSB가 정한 기준의 역량과 윤리성을 갖춘 재무설계사(CFP·AFPCK)를 비롯한 금융 전문자격자를 양성, 인증하고, 산업체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으로 개인종합재무설계(Personal Financial Planning)의 국민적 보급과 생활화를 실현시켜 가계 경제의 건전한 운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자격인증자의 권익향상과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5.>

② 이 법인은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개인종합재무설계 및 금융전문자격과 관련된 전문직 업무수행 기준을 제정, 개선, 보급하고, 산업체의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대국민 재무상담과 재무교육 등의 계몽 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기준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2.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업
3.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선별된 전문가에 대한 자격인증의 승인에 관한 사업

4.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전문가 양성 및 자격인증자의 전문성 유지와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별 커리큘럼의 제정, 개선, 시행 및 교재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5. 개인종합재무설계관련 등록상표 등 각종 표장의 가치보존 및 법적 지위보존에 관한 사업
6.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소비자 보호와 이익증진을 위한 자격인증자의 직업윤리규범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7. 개인종합재무설계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격인증자의 전문직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수행기준의 제정, 시행 및 업무수행과 관련된 제반행위를 규율하는 징계의 조사와 절차 등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개정 2020.09.15.>

8.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자격인증자에 대한 소비자와 감독당국의 신뢰증진을 위하여 자격인증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자격인증갱신기준의 제정,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업
9.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이해증진과 자격인증자의 권익증진과 전문성 및 역할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 <개정 2020.09.15.>
10.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의 증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문지식과 윤리에 대한 기준 등 자격인증요건 개선을 위한 국제FP표준위원회(FPSB)와 국제FPSB평의회(FPSB Council) 등 개인종합재무설계와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11.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국제표준의 제정, 개선, 시행을 위하여 국제표준제정기구(ISO) 등 관련기구와의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사업
12.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출판사업
13.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에 관한 국내외 세미나, 워크샵, 컨퍼런스, 포럼 등의 개최 및 관련사업
14. 개인종합재무설계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15. 금융전문자격의 교육, 시험, 인증 등에 관한 사업
16. 산업체의 인재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업
17. 금융소비자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 등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0.09.15.>
18. 교육시설과 사무실 등 부동산의 임대와 관한 사업

19. 직업소개사업 <신설 2020.09.15.>

20.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사업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 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부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이하 ‘회원’)은 사원인 정회원(이하 ‘정회원’)과 사원이 아닌 준회원(이하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중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단체로 한다.

1. 자격인증자: CFP 또는 AFPK 자격인증을 받은 자 (이하 ‘자격인증자’)
2. 전문가: 학계 종사자, 금융관련 전문가, 국가자격소지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3. 금융관련 단체: 금융기관, 자율규제단체(금융협회 등), 비영리법인, 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③ 준회원은 인증회원, 법인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별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인증회원: 자격인증자
2. 법인회원: 이 법인의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3. 일반회원: 이 법인의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제목개정 2020.09.15.] [전문개정 2020.09.15.]

**제6조(회원의 구성 및 가입)** ① 정회원은 제5조 제2항 각 호의 유형별로 균형 있게 구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의 가입은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회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정회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가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⑤ 준회원의 가입은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회장은 승인한다.
- ⑥ 회원모집방법은 이사회가 정한다.
- ⑦ 회원가입이 승인된 자는 입회비 및 회비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해당유효기간 동안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목개정 2020.09.15.] [전문개정 2020.09.15.]

**제7조(회비 등)** 회원에 대한 입회비, 회비 등의 부과 및 징수 방법 등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20.09.15.] [전문개정 2020.09.15.]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신설 2020.09.15.>

- ① 이 법인의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은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승인하는 경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5.>
- ②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회비 등 이사회가 정하는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회원은 법인의 정관, 규정 및 방침과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자격의 소멸)**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정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하고 2주가 경과한 때
2. 자연인인 경우 사망,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았을 때
3. 법인의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결정이 있을 때 또는 해산 또는 합병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소멸된 때
4. 제1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5. 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1. 준회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하고 2주가 경과한 때
  2. 자연인인 경우 사망, 파산선고 결정이 있거나,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심판을 받았을 때
  3. 법인의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결정이 있을 때 또는 해산 또는 합병으로 법인 또는 단체가 소멸된 때
  4. 이사회결의로 제명되었을 때
  5. 인증회원의 경우 인증이 유효하지 않을 때
  6. 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상 기소(약식기소포함)된 때
- ③ 회원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은 이 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입회비 및 회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09.15.]

**제10조(회원에 대한 제재)** 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의 의결로 경고, 자격의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다.

1. 법인의 정관, 규정 또는 방침에 위반되는 행위
  2.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자격인증자로서 정회원이 된 자의 자격이 유효하지 않을 때
- ② 정회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제명을 하는 경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한다.
- ③ 준회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 경고, 자격의 정지, 제명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④ 자격의 정지를 받은 회원은 그 제재기간 중에도 이 법인에 대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09.15.]

## 제3장 총 회

**제11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9.15.>

1. 이사회 의결의가 있는 경우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밝힌 문서로 요청한 경우 <개정 2020.09.15.>
3. 감사가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밝힌 문서로 요청한 경우 <개정 2020.09.15.>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총회를 특정한 장소에서 개최하지 아니하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원격통신 수단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통지함으로써 장소의 통지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통지의 방법을 전화,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준회원에 대한 총회의 통지는 정기총회의 경우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임시총회의 경우는 3일 전까지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총회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총회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5.]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 한다.

1. 정관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부동산)의 취득, 매도, 증여, 기채, 담보제공 승인에 관한 사항

6. 정회원의 가입승인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8.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회의 목적 사항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5.]

**제13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9.15.]

**제1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정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2조 본문의 방법에 의한 총회 시, 정회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는,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여 그 위임한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 항의 경우에는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2조 단서의 방법에 의한 총회 시, 정회원의 의결권은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 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원격통신수단의 방법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의결에 참가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20.09.15.]

**제15조(정회원의 의결권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인 정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 법인과 정회원간의 소송의 개시 등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 진행 및 그 종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정회원의 이해와 이 법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할 경우
3. 임원의 선임·해임 및 정회원의 제명을 의결함에 있어서 정회원이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총회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총회 참석은 가능)

[전문개정 2020.09.15.]

- 제1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의장 및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 ③ 정회원은 영업시간 중에 목적을 명시한 문서로 총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9.15.] [전문개정 2020.09.15.]

## 제4장 이사회

- 제17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신설 2020.09.15.>

**제17조의2(이사회 직무)**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를 집행이 법인의 목적에 타당한지에 관한 감독을 한다.

[본조신설 2020.09.15.]

- 제18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과 사유를 밝힌 문서로 요청한 경우
  2. 감사가 회의 목적과 사유를 밝힌 문서로 요청한 경우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일 7일 전에 목적, 회의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를 특정한 장소에서 개최하지 아니하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원격통신수단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을 통지함으로써 장소의 통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통지의 방법을 전화,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④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5.]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5.>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9.15.>
3.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폐기
4.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이사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9.15.>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5.>

④ 제2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와 제3항의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신설 2020.09.15.>

**제21조(의결권)** ① 모든 이사는 이사회에서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결의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안건,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은 영업시간 내에 목적을 명시한 문서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 법인은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경영상의 기밀 유지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5.]

**제23조(위원회 등)** ① 이사회는 자격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9.15.>

1. 윤리위원회

2. 교육연수위원회

3. 자격인증위원회

4. 기타 자격인증업무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개정 2020.09.15.>

② 이사회는 법인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09.15.>

1. 임원 추천위원회

2. 정회원 추천위원회

3. 인사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9.15.>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0.09.15.>

**제23조의2(임원 및 정회원 추천위원회)**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할 임원 추천을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 및 총회에서 승인할 정회원 추천을 위한 정회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각 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의 1/3은 이 법인의 정회원, 임직원 등 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 및 정회원의 모집 시기 및 방법, 추천 기준 등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09.15.]

## 제5장 임 원

**제24조(임원의 종류)**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이사(2인 이상 15인 이하)
3. 감사(2인 이하)

② 회장 및 이사는 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로 한다.

[제목개정 2020.09.15.] [전문개정 2020.09.15.]

**제24조의2(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이사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되 정회원이 총 이사의 1/3을 넘지 않게 하여 자격인증기관으로서의 무결성, 독립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CFP자격인증자
2. 금융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3. 금융관련 전문직 업계 전문가와 법률이나 IT 등 재무설계나 금융서비스 이외 분야의 전문가

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자격 또는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한다.

④ 이사였던 자가 감사가 되거나 감사였던 자가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된 후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이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인에 경제적 손해를 초래한 행위
4. 이 법인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행위
5.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제30조 임원의 선관의무에 위배되는 행위
7. 임원의 위법행위 및 법인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0.09.15.]

**제25조(임원의 임기 및 보수)**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종료일 전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료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③ 임원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되 보수 총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임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목개정 2020.09.15.] [전문개정 2020.09.15.]

**제26조(회장)**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②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회장은 회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이사회 심의를 거쳐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④ 부회장의 임기, 보수, 기타 신분과 관련 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회장의 유고 시에는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09.15.]

**제27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 법인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개정 2020.09.15.>

**제2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 이사회,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전문개정 2020.09.15.]

**제29조(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선임을 명시하여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임원의 수가 정관에서 정한 최소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선에 의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0.09.15.]

**제30조(임원의 선관의무)** ① 이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목적과 임무 달성을 위해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임원은 재임 중 및 퇴임 후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 자료 및 업무상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또는 스스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09.15.]

## 제6장 사무조직

**제31조(사무조직의 설치)** 이 법인의 정관상의 업무수행과 법인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향후 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사무조직을 둔다.

**제32조(사무조직의 구성)** 사무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회비 등 회원으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담금
2. 제3조(사업)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입
3. 기부금, 후원금
4. 기타 수입

[전문개정 2020.09.15.]

**제33조의2(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부동산으로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금액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09.15.]

**제33조의3(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처분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법」에 따른 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재평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재평가에 따라 기본재산의 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09.15.]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과 결산)**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15.>

② 예산에 관한 이사회 결의 후 총회의 승인 전까지는 경상비용 등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전년도 집행 실적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20.09.15.>

③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에 부족이 발생하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결의로 집행하되 그 집행 이후 총회에서 추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20.09.15.>

④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함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결산서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이사회는 예산 심의위원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20.09.15.>

**제36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관련 법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관습에 의한다.

**제37조(재무제표 등의 비치 및 공시)** ① 법인은 본점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재무제표
3. 총회의사록
4. 이사회이사록
5. 정회원명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5개년 치를 나머지 서류는 최근의 것을 비치한다.

[전문개정 2020.09.15.]

## 제8장 보 칙

**제38조(정관변경)** ① 정관의 변경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결의한다.

② 제1항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해산)** 이 법인은 총회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다만, 해산결의는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0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정회원 전원으로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분)**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 및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다만, 잔여재산의 처분결의는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을 설립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이 필요한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개정일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안은 개정일 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부 칙 <2020.09.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정관 개정 당시의 정회원은 제6조 제7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한다.

② 제24조의2 제3항의 규정은 이 정관 개정당시의 감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정관 개정 당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 부회장은 제26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